

고흥군의회 공고 제2025-30호

「고흥군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5년 12월 2일

고 흥 군 의 회 의 장



## 고흥군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 1.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지적장애인은 아니지만, 인지나 학습능력 부족으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느린학습자에게 평생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나.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다.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안 제4조, 안 제5조)
- 라. 지원사업 등(안 제6조)
- 마. 협력체계(안 제7조)

### 3. 제정조례안: 붙임

### 4. 조례안 예고기간: 2025. 12. 2. ~ 12. 8. (6일간)



[붙임 1]

## 고흥군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느린학습자”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 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의 평생교육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느린학습자의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
5. 그 밖에 군수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느린학습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학습 상담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심리·정서 상담
4. 자조(自助)모임 지원
5. 느린학습자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6. 느린학습자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7.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8. 느린학습자 인식개선 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군수는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붙임 1

## 관계 법령

### □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 붙임 2

## 전라남도 내 유사 조례 제정 현황

연 번	자치단체	조 례 명	공 포 일 자	소관부서	비고
계		2개			
1	완도군	완도군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2025. 11. 5.	인구일자리정책실	
2	여수시	여수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2023. 12. 6.	평생교육과	

# 고흥군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해당사항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고흥군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조

## 3. 미첨부 사유

「고흥군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조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 (연평균 1억 미만에 해당)

## 4. 작성자

작 성 자	여성가족과장 정혜경
연 락 처	061-830-6940

[붙임 2]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고흥군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